

#### **KPMG Tax**

# **Korean Tax Update**

May 2020, Issue 71

#### [조세뉴스]

# 기획재정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조세특례제한법」및「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전문보기]

'20.4.29.(수) 국회 본회의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정부는 '20.5.26.(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주요 개정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금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을 허용하고,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구매 시 선결제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를 세액공제하며, '20.4~7월 중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함.

# 국세청, 코로나 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전문보기]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사업자(불법대부업자, 유흥업소·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다단계, 상조회사 등) 중 탈루혐의자 10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국세청,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 [전문보기]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임.



### [판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재취득하고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일부국패)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 두 2331 판결

•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 증여의 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에서는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 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판시함.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됨.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1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 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소외인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면 이를 다시 ○○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 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12.31. 증여의제분 사건을 파기환송함. 한편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의 납 입일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 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 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패)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 두 58698 판결(심리불속행)

•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본문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독자적인 과세표



준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거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자체로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이므로, 세액공제규정이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신설 이유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입법자의 의도가 법인세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이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고 이 사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심판례]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19 서 3882, 2020. 4. 16.

• 「상법」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상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점, K-IFRS 는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K-IFRS는 상장법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만약「법인세법」이 K-IFRS 와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상환우선주의 처리 방식을 모두 수용한다면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부담이 달라져서 조세형평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여 관련 지출도 모두 배당으로 처리하고 있는점, 쟁점상환전환우선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고(쟁점계약 제12조),청구법인이 배당을 실시하면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우선배당율을 적용하여 배당을 받으며(쟁점계약 제13조),전환권행사기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청구법인이 상장하는 경우 언제라도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선임권도 있으므로(쟁점계약 제15조 및 제19조)경제적 측면에서도 자본(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점,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



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세무조정 오류로 200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출연금을 정당한 손금귀속시기인 2013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조심 2019 서 3372, 2020. 4. 23.

• 청구법인은 세무조정 오류로 쟁점출연금을 2000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였으나,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라 잔여재산 가액 확정 및 분배가 완료된 2013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출연금의 「법인세법」상 정당한 손금귀속시기가 2013사업연도인지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2000사업연도) 세무조정 오류로 인해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에 반영되어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였고, 당해 결손금은 향후 채무면제이익 등과도 상계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손금으로 기 반영된 쟁점출연금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손금에 해당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오류로 위와같은 세무상의 제반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당초 세무조정 오류를 시정하지 못하면서 다시 쟁점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세무상 이익(손금)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건축주택을 준공하기 이전이라도 손금불산입한 판매비 및 관리비를 배당으로 소 득처분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조심 2019 중 3838, 2020. 5. 7.

•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 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이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일반분양(수익사업) 이후 소득금액이 OOO 억원을 상회하는바, 그 중 쟁점금액(손금불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OOO만원을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일반영리법인은 아니어서 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등의 절차는 없었으나,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소득처분은 일종의 간주규정으로 유출금원을 소득으로 의제한 처분(대법원 2003두15300)에 해당하는 점,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급된 금원의 원천이 자본의 구성요소 중 출자금인지 이익금인지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그 원천이 출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배당 소득처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점(조심 2019부3546)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사]

# 가업상속공제액 계산시, 국내 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출자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관련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심사-2019-270, 2020. 3. 9.

• 이 사건 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해외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중소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당해 공장은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상 제약 등으로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방법 이외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설립한 현지법인 출자지분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으로 보는 것은 해외에 진출하여 성장을 도모하려는 중소 기업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당소득의 발생여부 등은 그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해외 현지법인이 없으면 이 사건 법인의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성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감액 경정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소기업 판단기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법인세를 감 액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한 것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심사-2019-34, 2020. 4. 14.

• 청구인은 심판결정례의 소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이 변경되어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기획재정부와 국 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신고 후 기획재정부 등이 기존 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였을 경우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획재정부 등에 질의·회신한 사실이 없고, 2017.5.12.부터 청구인의 법인세 신고일까지 예 규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기업으로서 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믿게 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조세심판원의 개별사건에 대한 심판결정례를 근거로 청구인이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행위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당초 거부처분을 받은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 구할 수 없는지 여부 (취소)

심사-2018-948, 2020. 4. 23.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 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 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기간 내 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유로는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한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 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경정청구제도는 위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경정처분 을 할 수 있는데 반해 납세의무자는 재차 경정청구를 사유로 경정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 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는 각각 별개의 납세자 권리 구제수단으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닌 점,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 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임.

## [예규]

적격분할 요건 중 5 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 분할하는 경우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385, 2020. 3. 30.

• 「법인세법」제 44 조 제 2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같은 법 제 46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분할존속법인)이 같은 법 제 44 조의 3 제 3 항 제 3 호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 근로자의 수는 합병등기일 1 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에서 같은법 제 46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적격요건을 갖추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배당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2020. 3. 12.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 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이 「법인세법」제 16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 18조의 2(2018.12.24. 법률 제 16008 호로 개정된 것)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2020. 3. 31.

•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 7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 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 29527 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 24 조 관련 [별표 6 의 3] 제 1 호 가목 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 2020. 3. 31.

•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제 343 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소득 46011-21368).

#### 비상장주식을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서면-2020-자본거래-0887, 2020. 4. 1.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한편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한 경우, 추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35조 제 2 항에 따른 증여일은 명의개서일임.



#### BOT 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2020. 4. 8.

• 토지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주차빌딩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 (이하 "임차인")와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토지를 제공하고 임차인은 주차빌딩(이하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기간 내 임차인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제 · 해지되는 경우나 사업기간 만료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신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하기로 한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용역제공기간 지급받는 대가와 시설물 설치가액을 용역제공기간 개월 수로 나는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주식총수익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주주명부상 주주 또는 주식에 대한 손익 및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받은 자 중 누구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 무가 있는지 여부

#### 부동산세제과-911, 2020. 4. 24.

• 'A'가 대상 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고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계약을 통해 'B'로부터 고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대신, 'B'에게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손익 및 매수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계약을 통해 'B'에게 주식에 대한 손익 또는 매수 선택권을 보장할 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B'에게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 있고, 따라서 주식 자체를 양도하거나 주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주 명부상 주주의 실질적인 주권이 형해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지배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제적 손익을 보장받았는지 보다는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주식 명의자인 'A'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주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해당 주식은 주식 명의자인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이행보증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지급받는 법인의 제품개발 성공여부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218, 2020. 4. 29.

• 내국법인(이하 'A 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B 법인')과 제품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보증금(이하 '보증금')을 B 법인에 지급하고 해당 가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B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A 법인이 공급받아 판매 하면서 보증금을 해당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품개발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A 법인과 B 법인이 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20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